



선	기관의 장
람	

제1444호

2026년 9월 17일(목)

- 차례 -

입법예고

제2026-1397호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입법예고	
제2026-1400호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입법예고	

공 고

제2026-1389호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양도면 도장1리~문고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 22
-------------	--	------

입법 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6-1397호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강 화 군 수**1. 개정 조례명 :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등 44종의 발급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 상위법령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 업무명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44종)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 개정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6호 신설하여 감면 근거 마련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생략)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의 업무명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비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정비

4.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7일까지 강화군수(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등
 - 제출 방법: 팩스 또는 전자우편
 - 보내실 곳
 - 1) 팩스: 032-930-3634
 - 2) 전자우편(이메일): sunyra@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32-93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필요한”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수리 및”을 “수리(受理),”로, “정보공개에 대한”을 “정보공개”로, “것 외에”를 “것을 제외하고”로 한다.

제3조 중 “등”을 “등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있어”를 “등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 및 납부 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를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자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 등)”을 “(수수료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을 “자체 행정목적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을 “반장이 행정목적상 필요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제기 등의 금액”을 “수수료 납부”로 한다.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가 본인(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고,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원)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증 명)			
1) 공장등록증명서	1통	1,000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1통	800 (무료)	
3)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1통	1,100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컬러 발급 시	1통	1,000 (1,500)	
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9)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1건	35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 5,000 계속 3,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4)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건	800	
5)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6)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1건	800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8) 그 밖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 확인서 등 재교부 신청	1건	8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2. 농수산 관계			
1)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3)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	
4)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	
5)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	
6)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7)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8)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9)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	
10) 구획어업 허가	1건	4,500	
11)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연장신청)	1건	3,000	
12)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	
13)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14) 어업신고	1건	1,500	
15) 허가어업 재개신고	1건	1,000	
16)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17)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18)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19)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 면허신청	1건	9,000	
20) 내수면어업(공동어업) 면허신청	1건	7,500	
2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2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23) 양식업 허가신청(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	1건	4,000	
2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26)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4,000	신규
27)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1,500	신규
28)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신규
29) 어획물운반업 등록 신청	1건	2,000	신규
30) 양식업면허 신청	1건	5,000	신규
31)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신규
32)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	신규
33)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	신규
34)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	신규
35) 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신규
3. 상공 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4. 건설안전 관계			
1)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1건	550	
나)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1건	1,050	
다)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1건	1,500	
라)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추진기관을 설치한 배	1건	2,4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5. 보건의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허가(부속 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	
2)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3) 의료기관 개설 신고(부속 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4)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양도·양수신고 포함)	1건	10,000	
6)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6. 문화체육 관계			
1)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등록10,000 변경 5,000	
2) 테마파크업 허가(신고) 신청			
가)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나)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다)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라)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1건	30,000	
4)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건	신 30,000 변 경 10,000	
6) 음악산업 관련법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나)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7) 게임산업 관련법			
가)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	1건	20,000	
마) 게임산업 관련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8) 비디오물 관련법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다)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라)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9) 영화 관련법			
가) 영화업 신고	1건	20,000	
나)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라)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1건	신규 30,000 변경 10,0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7. 교통행정 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 신고	1건	1,5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 대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

1. 자치법규명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련법령 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3.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별표 1의 수수료 징수 민원 업무명과 그 밖의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 안 제7조제1항제6호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민원인이 부담하던 수수료를 경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부서 요청서에 따르면 별표 1의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 민원 업무명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자구 및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사업자에게 새로운 허가·신고·제출의무 또는 금전적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관련 명칭과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민원 업무명 및 자구·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제출의견	○ 행정규제 해당 없음

5. 심사담당자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임희정(3403)

강화군 공고 제2026-1400호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적용 및 자구등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제1항)
 - 일반우편 발송가능 고지서 세액금액(30만원미만→45만원 미만) 상향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정비

4.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7일까지 강화군수(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등

- 제출 방법: 팩스 또는 전자우편
- 보내실 곳

1) 팩스: 032-930-3634

2) 전자우편(이메일): uhok@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032-930-3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1400호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신고 받”을 “신고받”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을 각각 “이장 · 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중 “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화 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 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 -----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 탁) ① (생략)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u>신고</u>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 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 야 한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 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신고 받----- -----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 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 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45만원 -----

-----.

② -----

이장·반장에게 -----
-----.

③ ----- 이장·반장에게 -----

----- 필요한 경비-----.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

1. 자치법규명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련법령 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5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금액을 동일하게 상향하고, 그 밖의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 안 제5조제1항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을 1매당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항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일정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행정절차상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의 상향은 행정기관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제출의무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의 범위·내용을 확대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자구·용어 정비와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의 삭제 역시 주민·사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실질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주민·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제출의견	○ 행정규제 해당 없음

5. 심사담당자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임희정(3403)

공 고

강화군 공고 제2026-1389호

수용재결신청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양도면 도장1리~문고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2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사항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강 화 군 수

1. 사 업 명 : 양도면 도장1리~문고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성 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9. 17. ~ 2026. 10. 1.)
4. 공시송달 대상자 : “목록 별첨”

5.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도로교통시설팀 ☎(032)930-3739
6. 기타 공지사항 :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 조서(토 지)

[면적 제1목록] 양도면 도장1리-문고개-원원 보행환경 개선공사(26수-용0025)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원리의종류	주 소
1	원원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 장리	91-5	답	답	121㎡ 81/2	유○미	원원광역시 미수출구 낙원중로 *** *동 ****호	
2	원원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 장리	90-5	답	답	15㎡	이○용	경기도 부천시 석원로 *** ***동 ****호	
						- 이작어택 -		
	토 지 합 계	2필지			136	2인		